#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67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이수진·조인철·이기헌

황정아 • 민병덕 • 최기상

추미애 • 백승아 • 전종덕

서영교 • 이용우 • 신정훈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이사 10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2명
-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임원의 임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

에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단, 기금이사의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다.
- 3.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제30조(임원) ①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			
내, <u>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u>	<u>이사 10명, 감사 1명을 두</u>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	<u>다</u> .		
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			
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u>&lt;신 설&gt;</u>	<ol> <li>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li> </ol>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		
	표 각 2명		
<u>&lt;신 설&gt;</u>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		
	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		
	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u>를</u> 받은 사람 1명		
<u>&lt;신 설&gt;</u>	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		
	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		

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 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면한다.

- <u>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u> <u>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u> 무원 1명
- <u>② 임원의 임명은 다음 각 호</u> <u>에 따른다.</u>
- 1.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단, 기금이사의 경우에는 제31조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다.
- 3.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 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 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 로 대통령이 임명한다.